

국가철도공단

부패취약분야 개선 수범사례

청렴문화의 새로운 시작



국가철도공단 주요 청렴정책 안내

취약분야 집중관리

- 건설현장 청렴 관리를 위한 청렴컨설팅 시행
-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'계약제도 혁신 TF' 운영

청렴문화 내재화

- 청렴인재 양성 프로그램 '초지일관' 운영
- 이해충돌 관련 직무 대상 특별교육으로 투기 등 부패사건 사전예방

대내외 협력강화

- 민관협력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전문가 제도 '청렴옴부즈만' 강화
- 청렴의지 표명 및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'청렴TV' 제작·배포



국가철도공단 직원 금품수수 금지 기준

청탁금지법, 공단임직원행동강령을 중심으로

금품제공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

-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모든 종류의 금품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수 금지

금품제공자가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

-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는 경우(지인 등) 1회 1백만원, 회계연도 기준 3백만원 초과 금품 수수 금지

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

- 위로·격려·포상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, 원활한 직무수행·사교·부조의 목적에 따라 허용된 경우 등



〈수수금액에 따른 공단 징계기준〉

구 분	직무관련자인 경우			직무관련자 여부 불문		
	10만원미만	10만원이상 50만원미만	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	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	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	500만원이상
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	견책	견책~감봉	견책~정직	감봉~강등	정직~해임	해임~파면
직무관련 대가성 향응수수	금품을 받고 부당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	견책~감봉	감봉~정직	감봉~강등	정직~해임	파면
	금품을 받고 부당처분을 한 경우	견책~정직	정직~강등	강등~해임	해임~파면	파면

※ 청탁금지법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과 중복 부과

※ 기타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행위: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경우,
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

국가철도공단 임직원 청렴의무의 근거

법적 의무

- 청탁금지법, 공직자윤리법, 이해충돌방지법 등

사회적 책임

-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
-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(최대 파면)



〈국가철도공단 각종 신고절차 안내〉

신고센터	신고대상 행위(예시)	신고센터 안내 및 바로가기(QR코드)
부패 신고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공단직원의 직무상 지위·권한 남용· 공단직원의 법령을 위반한 사익추구 (부정청탁, 금품수수, 불공정계약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담당부서: 감사실· 전화: 042-607-4333~7· 팩스: 042-607-3059 
공익 신고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건강,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,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담당부서: 감사실· 전화: 042-607-4333~7· 팩스: 042-607-3059 
스마트휘슬 (익명신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ip 추적이 되지 않는 외부 신고시스템을 통해 공단 임직원의 부패·비리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홈페이지 : www.smartwhistle.org (스마트휘슬) 
안심변호사 (익명신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안심신고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홈페이지 : www.kr.or.kr (고객소통 → 부조리신고센터 → 안심신고변호사) 